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

제정 **2010. 3. 1** 개정 **2012. 7. 1**

제1장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노동관계법,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단"이라 한다)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직원"이라 함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한 자로서 기간제 직원과 무기계약 직원, 정규직 직원으로 구분한다.
 - 2 "기간제 직원"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 - 3. "무기계약 직원"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 - 4. "임용권자"란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산학협력단의 대표인 산학협력단장(이하 "단장" 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- 5. "통상해고"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는 없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행해지는 근로계약 해지를 말한다.
 - 6. "징계해고"란 직원이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.
 - 7. "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"란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칙은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,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된다.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, 근로계약, 그 밖에 산학협력단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따라서 산학협력단 정관을 제외하고는 청 강문화산업대학교의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근로조건의 준수) 산학협력단은 이 규칙에 정한 조건으로 직원을 근로시키며, 직원은 단의 정관 및 이 규칙에 의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

- 제5조(채용의 원칙)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 충원,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면접 또는 실기 등 산학협력단에서 공지한 전형방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, 채용된 이후라도 언제든 지 해약할 수 있다.
 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- 2. 파산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다만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·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)
 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4. 병역 기피자
 - 5.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6. 경력 또는 학력,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
 - 7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
 - 8.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
 - 9.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- 10. 전 직장에서 징계해고 된 사실이 있는 자
- 제7조(구비서류)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채용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이력서(사진부착) 1부
 - 2. 자기소개서(A4 2매 이내) 1부
 - 3. 최종학교(졸업, 성적) 증명서 각 1부
 - 4. 경력증명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 - 5.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 - 6.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
- 제8조(근로계약) ① 단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.
 - ② 단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, 취업의 장소와 종 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,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(취업규칙의 작성・ 신고사항)에서 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.
 - ③ 단장은 제2항의 내용 중 정규직 및 무기계약 직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, 기간제 직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, 근 로시간·휴게에 관한사항,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, 휴일·휴가에 관한

- 사항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.
- ④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.
- ⑤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채용 취소) 직원이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경력사칭 또는 경력 은폐,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10조(이중취업 금지)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(휴직 중인자도 포함)인 자는 다른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3 장 복 무

- 제11조(복무의 정신) 직원은 단의의 교육정신과 산학협력단의 경영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항상 상호 간에 인화를 도모하고,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기본의무) 직원은 단의 정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, 직무상의 책임을 중시하며,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준수사항) 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항상 자기의 직무에 대한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하고, 신속,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.
 - 2.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
 - 3.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- 4. 단장의 승인 없이 산학협력단 업무 외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.
 - 5. 단장의 승인 없이 교내외 집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- 6.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- 7. 단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위, 유인물의 배포 및 게시 등과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- 8. 산학협력단의 시설물, 기계, 기구, 자재, 및 기타 물품을 사용(私用)하거나, 훼손 또는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.
 - 9.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을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.
 - 10. 업무상 범한 과오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- 11. 담당 직무의 권한 이외의 독단적인 행동 및 다른 직원의 작업을 방해하거나, 정당한 권한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.

- 12. 산학협력단의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 중에 음주, 도박,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13.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14. 직장내외의 청결과 정돈, 도난, 화재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15. 불성실한 근무(결근, 조퇴, 지각, 외출 등)로 산학협력단이나 다른 동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.
- 16. 근무시간 중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17. 직장 동료의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되지 못한다.
- 18. 결정된 산학협력단의 기본방침에 배치되는 언행 또는 이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19.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제14조(출근관리) 직원의 출근관리는 근무부서 팀장 및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.
- **제15조(결근)** 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결근계에 의하여 당일 정오까지 신고하여 야 하며,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, 행정부서 팀장 및 사업단(센터)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사전승인도 이에 준한다. 단, 구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지각 및 조퇴)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지각사유를 소속 행정부서 팀장 및 사업단(센터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당일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한다.
 - ② 직원이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행정부서 팀장 및 사업단(센터)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- ③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.
- 제17조(지각, 조퇴의 예외)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.
 - 1. 직무수행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
 - 2.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
 - 3. 교통사고 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경우
 - 4.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인한 경우
- 제18조(외출)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부서 팀장 및 사업단(센터)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**제19조(출장)**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. 단, 불가피할 경우 사후보고도 가능하다.
 - ②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, 전보, 기타의 방법으로 소

- 속 행정부서 팀장 및 사업단(센터)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③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.
- ④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.(청강문 화산업대학교 여비규정 준용)

제4장 근무평가

- 제20조(근무평가 시기 및 용도) ① 직원은 매년 1회 근무평가(이하 "평가"라 한다) 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.
 - ② 근무평가는 정규직에 한해 실시한다.
 - ③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.
 - 1. 기간제 직원의 재계약 여부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시 평가요소로 활용
 - 2. 임금지급의 기초 자료와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 평가요소로 활용
- 제21조(평가 방법) ① 평가 방법은 평가자의 재량에 따른다.
 - ② 사업단 직원의 근무평가는 1차 평가 및 2차 평가로 구분하며,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.
 - 1. 1차 평가(70%) : 사업단에서 평가(2인 이상)
 - 2. 2차 평가(30%) : 산학협력총괄팀장 및 산학협력단장이 평가
 - ③ 행정부서 직원의 근무평가는 1차 평가 및 2차 평가로 구분하며,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.
 - 1. 1차 평가(50%): 산학협력단 내 행정부서의 직원 5인 이상이 다면평가 실시 (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한 점수 합의 평균점수)
 - 2. 2차 평가(50%): 산학협력총괄팀장 및 산학협력단장이 평가
- 제22조(평가 등급 및 적용) 평가 등급은 4등급으로 분류하며,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. 등급별 인원구성 비율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 - 1. A등급: 평균 90점 이상(당해연도 보수 인상분 + 인센티브)
 - 2. B등급: 평균 80점 이상 90점미만(당해연도 보수 인상분)
 - 3. C등급 : 평균 60점 이상 80점미만(전년도 보수지급)
 - 4. D등급 : 평균 60점미만(계약 종료)

제 5 장 휴직 및 복직

제23조(휴직 사유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5일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휴직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거나 단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
- 2.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 · 소집에 응할 때
- 3.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휴직을 명할 때
- 4.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청구할 때
- 5.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기소 시
- 제24조(휴직기간 및 복직)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상해고 처리한다. 단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.
 - ② 휴직 중인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,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산학협력단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.

제 6 장 근로조건

- 제25조(근무형태)직원의 근로는 상근제이나 필요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근로형태를 할 수 있다
- 제26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며,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부여한다.
 - ② 1일의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 8시간으로 하되, 휴게시간은 12:00부터 13:00까지로 한다.
- 제27조(시간외근무) ①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형편에 따라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간외근무 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.
- 제28조(유급휴일) 휴일은 매주 일요일, 국경일, 국정공휴일 및 단에서 휴일로 정하는 날로 한다.
- 제29조(연차 휴가) 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다음달 첫날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, 근무기간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.
 - ②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, 직원이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.
 -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
- ④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차 휴가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휴무할 수 있다.
- 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 다만,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산학협력단은 「근로기준법 제61조」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할 수 있다.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.
- 제30조(경조 휴가) 직원이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. 결혼 : 본인 7일, 자녀 3일, 형제자매 1일
 - 2. 회갑 : 본인 및 배우자 3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2일
 - 3. 사망: 배우자 7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일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, 본 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
 - 4. 탈상 : 배우자 2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, 형제자매 1일
- 제31조(병가) ① 직원이 업무이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미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생리휴가) 산학협력단은 여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.
- 제33조(임산부의 보호)①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. 이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.
 - ② 임신 중인 여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중절 수술은 제외한다.
 - 1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
 - 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
 - 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
 - ③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산전·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·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제공 등을 적극 협조한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·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지급한다.
- 제34조(휴가 또는 병가의 신청)① 직원이 휴가 또는 병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병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락을 득할 수 있으나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.

제 7 장 임 금

제35조(임금)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.

- ②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,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다만, 무기계 약자는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며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④ 임금은 보험료, 제 세금 등 본인이 공제 의뢰한 것과 법령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은행계좌에 이체한다.
- (5) 임금의 구성, 산정방법, 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다.
- ⑥ 신규채용, 전보,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다.
- (7) 직원에 대한 임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제 8 장 퇴직 • 해고 등

제36조(근로관계 종료) ①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.

- 1. 사망하였을 때
- 2.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
- 3. 직원이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본인이 원하여 퇴직처리 되었을 때
- 4. 계속하여 무단결근이 7일 이상 지속되며, 이 기간 중에 산학협력단의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
 - 5.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
 - 6. 통상해고, 정리해고 또는 징계해고 되었을 때
 - 7. 무기계약 직원이 근무평가 결과 D등급을 총 2회 받았을 때
-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망한 날
 - 2.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38조에서 정한 날
 - 3. 사직원을 제출한 날(다만,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원이 수리된 날)
 - 4.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
 - 5. 통상해고,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해고 된 날

제37조(해고) ①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- 1. 정신적·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업무적격성 결여된 경우
- 3. 제24조에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거나,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**7**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을 때
 - 4.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 - 5. 업무 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 - 6. 개인적인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나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
 - 7.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45조와 같다.
- ③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경영상 사유에 의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. 이 경우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
 - 2.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
 - 3. 경영악화로 감원이 필요한 경우
 - 4. 산학협력단이 해산된 경우
- 제38조(정년) 정규직 및 무기계약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, 퇴직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(2월말 및 8월말)로 한다.
- 제39조(사직서의 제출) 직원이 퇴직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0조(퇴직자의 의무) 퇴직, 인사이동 등의 해당 사원은 담당 직무를 그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수·인계하여야 한다.
- 제41조(퇴직급여)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
 - ② 직원이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 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제 9 장 포 상 및 징 계

- 제42조(포상) ①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 - 1.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

- 2.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고안으로 공적이 인정 되었을 때
- 3. 직무에 관하여 예상손실을 모면 또는 감소케 하였을 때
- 4. 전 각 호 이외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 되었을 때
- ②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43조(시말서 제출)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할 때는 당해 직원은 반드시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4조(징계의 종류) 징계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.
 - 1. 해고 :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.
 - 2. 정직 :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을 면하며, 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에 대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3. 감봉 :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하되,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, 총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.
 - 4. 견책 : 징계사유가 경미하여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종결한다.
- 제45조(징계사유) ① 아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처분한다.
 - 1.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
 - 2. 1개월간 10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
 - 3. 고의로 산학협력단 물품을 파손한 자
 - 4. 부주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자나 고의나 중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자
 - 5.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자
 - 6. 다른 직장에도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자(이중 직업 불허)
 - 7.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 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, 작업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게 한 자
 - 8. 산학협력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, 반출하려고 한 자
 - 9. 직접적으로 산학협력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
 - 10.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경우
 - 11.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
 - ② 아래 징계사유 중에서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고, 중할 경우에는 정직이상의 징계를 한다.
 - 1.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
 - 2. 무단조퇴, 무단외출 , 무단결근을 한 자
 - 3. 부주의로 산학협력단 물품을 파손한 자

- 4.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자
- 5.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
- 6.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직원을 선동한 자
- 7.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자
- 8. 간접적으로 산학협력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
- 9. 업무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
- 10. 각종 법규나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한 자
- 제46조(징계심의) ① 산학협력단은 제45조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본 조에서는 "위원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각 통보한다.
 - ③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. 이 경우,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 - ⑤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.
 - ⑥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.
 - (7)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- 제47조(징계결과 통보)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한다.

제 10 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

- **제48조(직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)**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.
 - ③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.
 - ④ 산학협력단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연구윤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1 장 인계 · 인수

- 제49조(인계인수) ① 직원이 퇴직, 휴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단,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 또는 단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 다.
 -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받을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이를 인계하여야 한다.
- 제50조(인계인수 사항 및 절차) ① 사무인계인수는 사무인계 인수서에 인계자, 인수자 연서로 날인하고, 각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서류 및 장부 목록, 보관도서의 목록, 보관물건 목록,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현금수지계산서, 중요계획안건조서, 전산파일 및 디스켓 목록,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.
 - ③ 사무인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할 서류로서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또는 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대용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요지를 작성하여 사무인계 인수서에 표시하여야 하다.
- 제51조(인계인수기간의 경과) 사무인계자가 제5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**제52조(입회자)**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 입회자 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**제53조(보고)** 사무인수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첨부하여 부서장 또는 단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장 안전보건

- 제54조 (안전과 보건)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.
 - 1. 근로안전 및 근로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명령, 지시에 따라야한다.
 - 2. 항상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특히 통로, 비상 구 및 방화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물품을 놓지 말아야 한다.
 - 3. 안전장치, 소화설비, 위생설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, 변경 또는 그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 - 4. 원동기 동력전도장치 기타 기계설비의 시동 또는 정지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외에는 취

급하지 말아야 한다.

- 5. 가스, 전기,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하여야 한다.
- 6. 허가 없이 출입제한구역, 위험장소에 들어가거나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.
- 7.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.
- 8. 항시 근무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- 9.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건강진단, 전염병 예방접종 등은 필히 받아야 한다.
- 10. 요양과 병후의 취업은 단 및 의사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.
- 11. 이외의 사항은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5조 (건강진단) ① 직원은 채용 시와 채용된 산학협력단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평소 건강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시에는 소정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때까지 휴직 발령할 수 있다.
 - ② 산학협력단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보건상 필요한 경과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.
- **제56조 (보고)** 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57조 (보건위생 대책)** 산학협력단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.

제 13 장 재해보상

- **제58조 (재해보상)** 직원이 업무상 사망,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공무상 재해처리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.
- 제59조 (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)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 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산학협력단은 보상책임을 면한다.
- **제60조 (업무외의 재해)** 산학협력단은 업무 외 및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61조 (재해서류 보관) 산학협력단은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.

제 14 장 기 타

제62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취업규칙의 비치) 산학협력단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·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2조 (취업규칙의 변경)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.

제3조 (준용규칙)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력의 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본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기간제 직원 채용 자격기준 및 급여 기준

구 분	자격 기준	기본급	수 당	비고
가 등급	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직무에 전 문성을 가지고 업무 전담 수행			
나 등급	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자로서 해당 직무에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전담 수행		식대보조 교통비 경력수당	
다 등급	전문학사학위 소지자		자격수당	
라 등급	가, 나, 다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자 격기준			

- 1. 기간제 직원에 대한 급여의 기준은 매년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며, 기준과 달리 적용할 경우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- 2. 무기계약 직원은 매년 근무평가 실시 후 근로계약에 따라 개별적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.
- 3.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.
- 4. 국가 등 외부 사업비에 따라 운용되는 사업부서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.

(별표 2)

직원 근무성적 평가서

- 평가대상기간 :
- · 평가대상자 인적사항

소 속	직 급	성 명	담당직무내용(간단히 기재)

평가 요소	평가 항목	평정시 착안사항	배점	1 차 평점	2 차 평점	1. 평가기준			
	직무지식	담당직무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, 경험, 기술의 습득과 숙련의 정도	15			배점/ 단계	5점	10점	15점
직	및	주어진 일의 핵심을 정확히 이 해하고 지식, 경험 등을 응용하 여 적절한 판단 및 표현능력	10			탁월	5	9~10	14~15
무수	요년 업무 추진력	막은바 직무를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	15			우수	4	7~8	10~13
행	기획·창의 력	새로운 업무를 연구·기획하여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 는 능력	10			보통 미흡	3 1~2	5~6 0~4	7~9 0~6
력	신속·정확 성	주어진 업무를 기한 내에 신속 히 처리하며 그 결과의 정확성	5			- ਜ -	172	0~4	0~0
	건강상태	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건강상태	5						
	적극성	담당직무를 자발적·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	10			2. 평	정 점		
직	근무태도	매사에 예의와 범절을 지키며 친절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출·퇴근 등 제규정 준수상태	5			구분 1차	평가점	평가지	
무수행	책임감	주어진 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	15			평가 2 차 평가	/100		(인) (인)
대 도	협조성	상사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 계를 유지하며 조직전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자세	5			등급			
	성실·신뢰 성	성실성과 신뢰성의 정도	5						
		합 계	100						

[별지 1]

근로계약서

청강문화산업대학 산학협력단(이하 '갑'이라 한다)과 OOO(이하 '을'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2. 근로장소:

3. 업무의 종류 :

4. 근 로 시 간 : 9시부터 18시까지(1일 8시간) (휴게시간 : 12시~13시까지)

5. 휴 일 : 매주 일요일

6. 임 금

가. 월급: O,000,000원

나. 임금 계산시간 : 당월 1일 ~ 말일

다. 임금 지급일 : 매월 25일

라. 임금지급방법 :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을이 지정하는 예금통장에 입금

7. 퇴직에 관한 사항

가. 『을』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한다.

- 나. 『갑』이 계약기간 중에 『을』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『갑』은 『을』에게 1개월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.
- 다. 『을』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『나』 항에도 불구하고 『갑』은 『을』을 즉시 해고할 수 있다.
- 라. 『을』의 근로기간이 근속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, 『갑』은 『을』의 퇴직 시『을』에 대한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
8. 기 타

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.

20 년 월 일

(갑) 기업명 :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경학 (인)

주 소 :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-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

사업자등록번호: 126-82-07878

(을) 근로자 : O O O (서명)

주 소:

주민등록번호:

[별지 2]

기간제근로자용 근로계약서

<u>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갑"이라 함)과 ○○○(이하 "을"이라 함)</u>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- 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2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 - 근무장소(부서):
 - 업무 내용:
 -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.
- 3. 근로시간 및 휴게
 - 근로시간 :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(휴게시간 :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)
 -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4. 근로일 및 휴일
 - 근로일 :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. 다만 토요일(무급 휴무일)과 휴일은 근로 일에서 제외한다.
 - 휴일 : 주휴일은 매주 (일)요일로 한다.
- 5. 휴가
 -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6. 임금
 - 임금은 시간급(일급, 월) 원, 법정수당(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) 등으로 구성하며,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.
 - 임금은 매월 00일(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) 을에게 직접 지급(을 명의의 예금계좌) 한다.
- 7.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등 노동관계법령,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00

(갑) 주 소 : (전화 :)
회사명 :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(을) 주 소 : (전화 :)
주민등록번호 :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3]

출 석 통 지 서

인	ा सम	한글			② 소	속	
적	① 성명	한자			③ 직위	(급)	
사 항	④ 주소						
5	출석이유						
6	출석일시		ان د	년 월	일	시	분
7	출석장소						
<u></u>	의사항	시 제출할 2. 사정에 개최일 전 3. 정당한 /	는 것. 의하여 서면? 1일까지 도착 사유서를 제출 서를 제출하기	진술을 하도록 슬하지 ㅇ	하고자 할 진술서를 나니하고 <i>7</i>	· 때에는 제출할 시정된 (라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장계를 위한 심의 회의 것.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
제55조	의 규정에	의하여 위와	같이 귀하의	출석을	- 통지합니	다.	
			년	월	일		
		청강문화산	업대학교 산혁	학협력단	장		(직인)
		귀 하					

진 술 권 포 기 서

인	① 성명	한 글	② 소 속
적	Û 78 -8	한 자	③ 직위(급)
사 항	④ 주소		
	j	본인은 귀 회여	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
			년 월 일
			성 명 (인)
청강남	문화산업대학교	1 산학협력단	장 귀하

[별지 4]

서 면 진 술 서

소	속	직위(급)			
성	명	제출기일	년	월	일
사 건	명				
불 참 사	유				

진술 내용

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별지 **5**]

징 계 의 결 서

o]	적 사	ర్చే-	소	속	직	급	성	명
· ·	7 1	0						
의	결 주	문						
ଠୀ		유						
	산학협	년 력단 운영	월 명위원회	일				
	산학협			일		위 원 장		(인)
	산학협			일		위 원 장 위 원		(인) (인)
	산학협			인				
	산학협			인		위 원		(인)
	산학협			일		위 원		(인) (인)
	산학협			일		위 원 위 원 위 원		(인) (인) (인)

[※]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.

[별지 6]

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							
① 소 속	② 직 위(급)	③ 성	명				
④ 주 문							
⑤ 이 유	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						
위	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	다. 년	월 일				
	처분권자 (처분제2	성권자)	(직인)				
귀 히							
참 고: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							